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한 외부 안전검사 근거 마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565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한 외부 안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1항 제6호 등)	3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565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성능·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

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한 외부 안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 31조의2제1항제6호 등)

개정안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u>	6. <u>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② (생략)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6호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5. (생략) ③ ~ ⑥ (생략)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받지 아니한 자 4.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31조의2제1항제6호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¹⁾로 하여금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조업차량 등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이러한 안전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의무가 없어 안전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차량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공항³⁾에서 공항 특수차량⁴⁾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는 지상조업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검사하는 이른바 ‘셀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비전문업체

1)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항운영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 「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공항시설법」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조업사 간 교차로 차량 및 장비에 대해 점검하거나(인천공항, 김포공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출장점검(그 외 공항)을 통해 공항 특수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4)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등에서 항공기 견인, 급유, 화물수송 등을 위해 운행하는 특수차량

의 검사 전문성 문제, 검사 및 운행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음.⁵⁾

이에 개정안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상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하고(안 제31조의2제1항제6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61조제2항), 안전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행법 제31조의4에 따르면 ‘공항운영자’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해 안전검사 실시여부를 포함한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5) 제22대국회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24.10.22.

6) 「공항시설법」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항운영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안전검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검사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 내 지상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자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31조의2제1항제6호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와 관련하여, 안전검사의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61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검사 업무의 권한 위탁 규정과의 명확한 연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⁷⁾ 일부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⁸⁾

7)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주차장법」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아래와 같이 일부 조문정리가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② (생략)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또한 안 제61조제2항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 및 위탁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중전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6호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6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61조제2항**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안전검사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국가 업무로 규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